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송언석 · 최수진
김대식 · 추경호 · 조승환
이인선 · 서천호 · 서일준
곽규택 · 김미애 · 김승수
정성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·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경비 부담 중 ‘예산의 범위에서’를 삭제하고,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,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

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경비(이하 “실험·실습 시설 운영비”라 한다)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·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·실습에 필요한 <u>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.</u>	제19조(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비(이하 “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”라 한다)를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·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.
②·③ (생 략)	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

과 같음)
